물품공급 기본 계약서

에스케이텔레시스주식회사에서 물품 구매(이하 "고객사"라 한다) 업체와 에스케이텔레시스주식회사(이하 "공급사"라 한다)는 "고객사"와 "공급사" 상호간의 물품거래에 대한 상호이익 존중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본계약을 체결한다.

- 다 음 -

**제 1조 (거래의 목적)**

본 계약은 Cyber Shopping Mall 인 okplaza(www.okplaza.kr)를 이용하여"고객사"가 "공급사"로 부터 물품을 구매하고 "공급사"는 이를 "고객사"에게 공급하는데 필요한 계약조건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 조 (적용범위)**

1. 본 기본계약은 "고객사"와 "공급사"간의 물품거래계약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한 것으로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개개의 거래계약(이하 "개별계약"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된다. 기본 계약과 개별계약과의 모순 발생시 본 기본 계약서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2. 개별계약은 "고객사"의 주문서 또는 온라인 주문으로 "개별계약"을 대신할 수 있다

3. 고객사와 공급사 사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기본계약서외 내용을 정한 계약(이하 "특별계약"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기본계약"과 "특별계약"의 모순 발생시 "특별계약"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 3 조 (개별계약의 성립 및 변경)**

1. "고객사"가 okplaza(www.okplaza.kr)를 통하여 구매 요청한 물품은 발주한 때로부터 12시간 이내에 "공급사"가 주문의 거절, 변경, 기타 발주 내용에 대한 이의를 통지하지 않는 경우 "고객사"의 발주를 승낙한 것으로 보며, 동 승낙으로 이 계약에 의거한 개별계약(이하 "개별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된다.

2. "고객사"는 발주서를 등록한 때로부터 12시간 이내에 "공급사"에게 변경통지를 함으로써 기 등록된 발주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거나 주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제 4조 (거래의 형태)**

1. "고객사"는 "공급사"가 개설한 인터넷 쇼핑몰인 okplaza(www.okplaza.kr)의 발주서 양식에 필요사항을 기재하여 "공급사"에게 물품을 발주한다.

2. 물품의 품명, 규격, 단가 기타 상세한 사항은 okplaza에 등록/게시되는 조건에 따르며, 고객사의 주문 시간에 따른 물품별 인도 소요시간은 okplaza운영규칙(okplaza에 별도 게시)에 규정한 바에 따른다.

3. "공급사"는 물품의 생산공정 및 납기관리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okplaza에 공정진행 및 생산완료 등을 등록하고, 인도가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공급사"는 지체 없이 "고객사"에게 통지하여 추후 일정을 협의하여야 한다.

**제 5 조 (물품의 인도 인수)**

1. 물품 인도 인수 시 "공급사"는 "고객사"의 현장 관리감독자 또는 "고객사"가 지정한 대리인으로부터 서면으로 인수 확인을 받고, "고객사"는 물품 인수 후 okplaza에 인수확인 등록을 한다.

2. "고객사"는 물품 인수 시 물품에 대한 인수검사를 실시한다.

3. 인수검사 시 수량부족 또는 하자 물품을 발견한 경우 "고객사"는 지체 없이 이를 "공급사"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공급사"는 부족수량 공급 또는 정상물품 공급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물품의 소유권과 위험부담은 물품의 인도 인수와 동시에 "공급사"로부터 "고객사"에게로 이전된다.

**제 6 조 (품질관리 및 하자보증)**

1. "공급사"는 물품의 생산, 보관 및 운송과 관련하여 적절한 품질관리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물품에 대한 하자보증 기간은 인도 인수일로부터 1년간으로 한다.

3. 하자보증 기간 중 "공급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물품의 하자가 발견된 경우 "공급사"는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지체 없이 하자 없는 물품으로 대체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제 7 조(대금 지급)**

1. 본 조항은 "고객사"가 구입한 물품이 통신 건설공사의 지입 또는 지입형 자재일 경우로 국한한다.

2. "공급사"는 전월 26일부터 당월 25일까지 "고객사"에게 공급한 물품의 대금을 당월 말일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고객사"에게 청구한다.

3. "고객사"는 제 2항에 규정한 물품 대금을 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30일 후 현금으로 "공급사"에게 지급한다.

4. "고객사"가 대금지급을 지체할 경우, "고객사"는 그 지체금액에 대하여 연 20%의 이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공급사"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 8 조 (기한 이익의 상실 등)**

일방 당사자에게 아래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당해 당사자(이하 "귀책당사자"라 한다)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상대방은 사전 최고 등의 절차 없이 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귀책당사자가 전액 배상한다.

1. "고객사" 또는 "공급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

2. 제3자에 의한 강제집행(압류, 가압류 또는 가처분 포함)을 당하거나 화의신청, 회사정리절차개시신청 또는 파산신청이 있을 경우

3. 발행, 배서, 보증 또는 인수한 어음이나 수표가 부도 처리될 경우

4. "고객사"가 "공급사"의 대금 청구일로부터 90일 이상 대금 지급을 지체할 경우

5. 휴업, 폐업, 전업하거나 기타 이 계약을 이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

6. 공사계약이 해제, 해지 또는 만료될 경우

7.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

8. "고객사" 또는 "공급사"이 재해 및 기타 사유로 인하여 계약내용을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쌍방이 인정하는 경우

9. 일방 당사자가 본 계약을 위반하여 상대방의 시정 요구를 받고도 14일 이내에 시정하지 않을 경우

10. 기타 이 계약을 위반할 경우

**제 9 조 (계약기간)**

이 계약의 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이며, 계약만료 1개월 전까지 계약변경 또는 계약종료에 대한 일방 당사자의 서면 통지가 없을 경우 계약기간은 1년씩 자동 연장된다.

**제 10 조 (비밀유지)**

1. "고객사"와 "공급사"는 상호거래를 통하여 얻은 상대방의 업무상 및 기술상 정보 또는 기밀을 상대방의 승낙이 없이 제 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2. "고객사"와 "공급사"는 계약기간 중은 물론 만료 또는 해제된 경우에도 상기 1항의 의무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 11 조 (불가항력)**

1. 불가항력이라 함은 태풍, 홍수 기타 악천후 등 천재지변,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수송기관의 사고, 노사분규, 법령의 제정 및 개폐, 국가기간의 경정 등 기타 통제할 수 없는 사태의 발생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2. "고객사"와 "공급사" 당사자들의 귀책사유가 아닌 1항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본 계약이 불이행 또는 지체된 경우 해당 당사자는 불이행 및 지체로 인한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당사자는 불가항력이 발생된 사실을 서면으로 지체 없이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계약이 이행이 가능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한 후 그로 인한 일방당사자의 불이행 및 지체가 1개월 이상 계속될 경우 상대방은 본 계약 등을 해지할 수 있다.

**제 12 조 (윤리규범의 준수)**

"공급사"는 본 계약 등에 따른 거래와 관련하여 "고객사"의 임직원들에게 금전, 물품수수 또는 향응대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기타 부도덕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한다. "고객사"는 "공급사"의 임직원이 본 계약 등으로 인한 거래와 관련하여 "고객사"에 대해 금전, 물품수수 또는 향응대접 등 부당한 이익을 요구하지 않도록 한다.

**제 13 조 (권리의 양도금지)**

"고객사"과 "공급사"은, 상대방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는, 본 계약 등으로부터 생기는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할 수 없다.

**제 14 조 (지적재산권)**

1. "공급사"은 "고객사"로 부터 수주한 물품을 납품함에 있어 이로 인하여 "고객사" 또는 "공급사"이 타인의 상표권, 특허권, 저작권, 의장권 및 실용 신안 권이나 영업비밀 등을 포함한 일체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님을 보증하며, 이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진다.

2. "공급사"이 납품한 물품에 관하여 "고객사" 또는 "공급사"과 제3자 사이에 지적재산권에 관한 분쟁이 발행한 경우 "공급사"은 자신의 비용으로 이를 방어하여야 하며, 만일 위 분쟁으로 "고객사"이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공급사"는 변호사 보수를 포함한 제반 경비 및 신용상의 손해를 포함하여 "고객사"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 15 조 (기타)**

이 계약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okplaza 게시사항 및 okplaza운영규칙을 적용하며, 해석에 이의가 있는 경우 관계법령 및 일반 상 관례에 따른다.

**제 16 조 (분쟁의 해결)**

본 계약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분쟁에 대한 제 1심 관할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한다.

**제 17조 계약의 성립**

본 계약의 성립은 okplaza의 업체 등록 시 사용자의 동의(수락) 시점부터 성립된다.